

#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학생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풍부한 역사지식과 건강한 역사 의식을 갖는 세계시민이자 역사학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인으로서, 인천 경기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선도하는 인하대학교 사학과에 구성원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본 대학교 사학과에 적을 둔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그 기간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학교 당국 및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학생 대표와 함께 그에 대응할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올바르게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학과 학생회, 사학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2장 학생총회

제6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회의이다.

제7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한다.

제8조 (권한)

1. 회칙의 개정의 발의권 및 의결권
2. 학생총투표 발의권
3. 사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탄핵권
4. 사학과 대의원 탄핵권
5. 기타 전체회원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의 의결
6. 학년대표 심의 및 의결권

제9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사학과 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의 결위 시 부학생회

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부학생회장의 궐위 시 사학과 대의원이 그 직을 승계한다.

#### 제10조 (소집)

1. 학생총회는 회원의 1/4 이상이 서명으로 요구했을 경우, 또는 학생회 집행부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일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의장은 긴급한 상황과 안건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직권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학생총회의 소집은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후 24시간 내에 공고하여 7일 이내에 소집한다.

#### 제11조 (의결)

1.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제8조의 2, 5, 6항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8조의 1, 3, 4항은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공개) 학생총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사학과 학생회에서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기간은 결의안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한다.

## 제3장 학생총투표

제13조 (지위) 학생총회에 준하는 의결투표이다.

제14조 (구성) 학생총투표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한다.

제15조 (권한) 학생총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 제16조 (관리)

1. 학생총투표의 관리는 사학과 회장이 진행한다. 단, 사학과 회장 궐위 시 부회장이, 부회장 궐위 시 사학과 대의원이 관리직을 승계한다.
2. 투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인하대학교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17조 (학생총투표)

1. 회원의 1/4 이상이 서명으로 요구했을 시 진행하며, 72시간 내에 공고하여 30일 이내에 진행한다.
2. 본회 회칙 제8조 2항에 의거, 총투표가 발의되었을 경우 진행한다.

#### 제18조 (의결)

1.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과반 이상의 투표로 성사된다.
2. 학생총투표의 의결은 투표 인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공개) 학생총투표의 결과는 투표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사학과 선거관리위원회와 사학과 학생회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장 학생회

제20조 (지위) 사학과 학생회는 사학과를 대표하는 학생자치기구이며 집행부이다.

### 제1절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21조 (학생회장)

1.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의장, 집행부의 의장, 학생총투표 관리자가 되어 이를 주관한다.
2. 학생회장은 회원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당국과의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한다.
3. 학생회장은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여야 한다.

제22조 (부학생회장)

1.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학생회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시 권한을 대행한다.
2. 부학생회장은 등록 학기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제23조 (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회원의 자유로운 학생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업무 진행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를 수렴을 하고 회칙 준수와 업무 집행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장은 본회의 학생총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
2. 학생회장은 집행부 소집 요구권이 있다.
3. 본회 회원을 대표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행사에 학생 대표로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본회 회원을 대표하여 학생 활동과 관계되는 학교행정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5. 학생회장은 회칙에 대한 개정의 발의 및 의결할 권리와 회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개정된 회칙을 공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6. 학생회와 학생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심의, 조사할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7. 그 외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24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궐위될 때 권한의 대행)

1. 학생회장이 사퇴 또는 사고 상태일 경우에는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이 된다.
2. 부학생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학생회장이 부학생회장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학생회장은 문과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취임한다.
3.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었을 때는 궐위 시점부터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문과대학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
4. 권한대행의 자격은 궐위 시점의 당해 연도 집행부장 중 한 명으로 한다.

5.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된 때 또는 그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자격을 상실한 때, 그 잔여 임기가 120일 이상일 경우에는 10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재선거한다.
6. 차기 연도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는 차기 연도 학생회장단의 임기 시작일부터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절 집행부

제25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 기구이다.

제26조 (구성)

1. 집행부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2. 각 부 부장은 업무 집행을 위해 차장과 부원을 둘 수 있다. 단, 차장과 부원은 학생회장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제27조 (업무 및 권한)

1. 학생총회 및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
2. 본회의 일체의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문과대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제28조 (업무부서) 학생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그 편성은 당해 연도 학생회장단에게 전권 위임한다. 단, 그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총무부 : 학생회 재정 전반을 운영하며, 자산 및 재산 관리에 책임을 진다.
2. 기록부 : 학생회 회의를 기록하며, 기록물 제작에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홍보부 : 사학과 내 각종 사업 및 행사마다 자보 및 홍보물을 제작에 책임을 진다.
4. 체육부 : 사학과 학우들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여 관련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9조 (집행부의 선출 및 임기) 집행부 부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집행부의 각 부장은 문과대학 대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2. 각 부의 장은 학생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집행부의 각 부장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3절 과 학년대표

제30조 (과 학년대표의 임명 및 선출)

1. 과 학년대표는 각 학년별로 1명씩 임명 또는 선출된다.
2. 선출의 경우 투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하며, 민주적 절차에 의거한다.
3. 과 학년대표의 임명 및 선출은 학생총회에서 의결 및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4. 단, 학생총회에서 의결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을 따른다.

과 학년대표 입후보자가 단일일 경우, 문과대학 대의원회의 인준 과정을 거친 후 임명된다.

과 학년대표 입후보자가 두명 이상일 경우, 학생회 집행부와 과 대의원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5. 과 학년대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생회장이 과 학년대표를 지목하고, 지목된 자는 문과 대학 대의원회의 인준 과정을 거친 후 임명된다.

6. 과 학년대표의 임기는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제5장 대의원회

제31조 (지위)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 기구이다.

제32조 (임명) 본회 회원 중 20명 이상의 서명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

제33조 (임기) 대의원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34조 (권리와 의무)

1. 대의원은 학생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대의원은 본회 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으로서의 모든 업무에 참여 및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대의원은 다른 단체의 장 및 집행부를 겸임할 수 없다.

제35조 (업무 및 권한)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36조 (감사)

1. 재정에 대한 감사와 업무 감사는 매 학기말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단, 문과대학 대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특별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기타 제반 사항은 인하대학교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 제6장 학회

제37조 (목적) 학회는 사학과 소속으로 현세대와 이전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로의 상호 교류, 역사 연구 분위기의 선도와 지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8조 (학회장)

1. 학회장은 학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출한다.

## 제7장 재정

제39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하며 본회의 회원을 위하여 쓰인다.
2. 본회의 재정은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1월부터 그 해 12월까지로 하되 매월 결산을 한다.

제41조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예산은 집행부가 월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학생회 회의에서 심의, 조정하고 문과대학 대의원에서 의결한다.

제42조 (예산집행)

1. 예산의 집행 시에는 학생회장이 집행한다.
2. 각 행사 마다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경비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 (결산)

1. 결산보고는 매달마다 실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행사가 끝나면 행사 결산을 시행하며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학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학기별 결산을 실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 (감사)

1. 매달 작성된 결산 보고서와 본회 재정에 쓰인 내역은 문과대학 대의원회에 의해 감사를 받는다.

## 제8장 선거

제45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46조 (기타 세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과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시행한다.

## 제9장 학생회비

제47조 (정의)

1. 학생회비는 사학과의 1년 예산이다.
2. 납부자는 제3조에 따른다.
3. 수납자는 '사학과 학생회'이다.

제48조 (금액) 학생회비는 10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비변경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학생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9조 (납부) 납부자는 1학년 1학기에 10만원을 1회로 완납해야 한다. 단, 그 기한은 학기 중 1/4로 한다.

제50조 (추가납부) 1학년 1학기에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부자 역시 희망자에 한해 학생회비 추가납부가 가능하다.

제51조 (집행) 학생회비는 해당 연도 학생회에서 집행한다. 납부자는 집행된 학생회비 내역의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 (환불) 학생회비 환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단, 학생의 단순변심 및 휴학에 의한 환불은 실시하지 않는다.

1. 다른 학과로 전과했을 때
2. 다른 학교로 편입했을 때
3. 자퇴했을 때
4. 기타 이유에서 타당함이 인정 될 때

제53조 (환불방법) 학생회비 환불은 납부 시 발행된 영수증을 확인한 후에 실시한다. 단, 납부자와 수납자 중 한 쪽의 영수증만 확인되어도 환불을 실시한다.

1. 다른 학과로 전과했을 때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환불을 실시한다.
2. 다른 학교로 편입했을 때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환불을 실시한다.
3. 자퇴했을 때는 사학과 사무실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환불을 실시한다.
4. 기타 이유에서 타당함을 증명하면 환불을 실시한다.

## 제10장 학과

제54조 (학생회실)

1. 사학과의 학생회실은 5호관 남쪽 지하 1층 064이다.
2. 사학과 학생회실은 사학과 학우들을 위한 공간이며, 보유 물품들은 사학과 학우들을 위한 것이다.
3. 사학과 학생회실 내에 물품들은 사학과 학생회에서 관리한다.

## 제11장 회칙 개정

제55조 (상정) 회칙 개정은 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를 거쳐 상정한다.

제56조 (개정) 사학과 학생회장의 주관 하에 개정한다.

1. 학생회장은 상정 발의 후 7일 이내에 회칙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공고한다.
2. 회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본회 회원으로 한다.
3. 회칙개정특별위원회는 회칙개정안을 학생총회 또는 총투표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제57조 (회칙개정안의 공고) 의결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 (회칙개정의 의결)

1. 발의 시 학생회장은 7일 이내에 공고한다.
2. 제안된 회칙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학생총회 또는 총투표로 의결한다.
3. 한번 의결된 안건은 1년 이내에 개정할 수 없다.

제59조 (공포) 회칙 개정안이 학생총회에서 의결되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관례와 학생회 사업의 통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문과대학 대의원회에서 담당한다.

제3조 본회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회칙은 공포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본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12.22. 인하대학교 사학과 회칙제정위원회

사학과 회칙제정위원장 전지혜

회칙제정위원 박세은 박상진 김경빈 장영광 최유식

자문위원 이재빈